정보[(∨)공개,(　)부분공개,(　)비공개] 결정통지서

수신자 **강동진** (우 **10273** ,주소 **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헌로 398-17** **윤창아파트 102동106호**)

접수번호	39055	접수일	2025-06-24

청구내용	6월3일 21대대선 개표상황표 신청합니다		
공개내용	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표		
공개일시	2025-06-27	공개장소	

*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「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」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공개방법	[]열람.시청 []사본.출력물 [C]전자파일 []복제.인화물 []기타 ()			
수령방법	[]직접방문 []우 편 []팩스전송 [C]정보통신망 []기타 ()			
납부금액	①수수료 0 원	②우송료 0	③수수료감면액 0	계(①+②+③) 0
	납부일	수수료 산정 명세	수수료 납입계좌(입금시) 기업은행 : 070-031860-01-113 (예금주 :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)	

*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,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.

비공개의 (전부 또는 일부) 근거 조항	
비공개 (전부 또는 일부) 내용 및 사유	

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『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』 제13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.

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



유 의 사 항

1.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,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.
 가.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: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 등)
 나.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: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
 다.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: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
2.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으며,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.
 가.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·전자결제 등
 나. 수입인지(정부기관)
3. 우송의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앞면에 적힌 공개일시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선거관리위원회(소속기관을 포함함. 이하같음) 에 보내셔야 합니다.
4. 정보공개와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 18조 및 「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」제18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5. 정보공개와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6.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.
7. 이 통지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, 청구인의 필요한 경우 직인 날인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